

제23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어린이 통학
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3 월 12 일

여 수 시 장 서기영



여수시 조례 제2054호

붙임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054호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생 략)</p>	<p>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신 설〉</p>	<p>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에 안전 사고 방지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